

의안번호	2208567
의 퇴 인	허성무 의원
회 답 일	2025. 2. 28.
추 계 번호	25F12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방위산업, 원자력, 우주항공 등 추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방위산업, 원자력, 우주항공 등을 추가 －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반도체 등 8개 분야에서 방위산업 등을 포함한 11개로 확대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방위산업, 원자력, 우주항공을 포함하는 경우, 해당 분야의 연구·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등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높아짐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(안 제10조제1항)
- 국가전략기술*은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'R&D 세액공제')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일반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
- ※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

[표 1]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¹⁾ 비교

(단위: %)

	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	
				반도체 외	반도체
R&D 세액공제	중소기업	25	30~40	40~50	
	중견기업 ²⁾	8~20	20~35	30~45	
	대기업	최대 2	20~30	30~40	
통합투자세액공제	중소기업	10	12	25	30
	중견기업 ²⁾	5~7.5	6~9	15~20	20~25
	대기업	1	3	15	20

주: 1) 표의 공제율은 당기 R&D 비용 또는 당기 투자분 기준

2)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

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를 현행 8개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11개 분야로 확대
 - －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2025년 2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으로 인공지능 및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되어 8개 분야가 되었음
 - ※ (현행)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
 - (개정안) 상기 분야에 방위산업, 원자력, 우주항공 등 3개 분야 추가
 - － 분야내 구체적인 기술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[별표 7의2]에 규정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되는 방위산업 등의 범위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분야의 R&D 및 투자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등의 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방위산업, 원자력, 우주항공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 - － 참고로, 방위산업, 우주항공 분야는 현재 신성장·원천기술에 독립된 분야로, 원자력 기술은 에너지·환경 분야에 세부분야로 포함되어 동법 시행령 [별표 7]에 구체적인 기술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,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될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[표 2] 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상 인공지능, 양자컴퓨터, 미래형 자동차 등 범위

기술분야		기술
항공 우주 ¹⁾	무인 이동체	(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시스템 기술) 장애물 탐지 및 충돌회피 기술, 고장진단 기술 등 (지능형 임무수행 기술) 3차원 디지털 맵 생성 및 위치인식 기술, 무인기 교통관제 기술 등 (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) GPS, INS 등의 항법센서 기술, 소형 경량레이더 기술 등 (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) 소형 무인기용 고효율 전기모터 기술 등 (무인기 데이터링크 핵심기술) 소형 경량 탑재통신장비, 정밀 추적 안테나 기술 등 (무인기 지상통제 핵심기술) 소형무인기 조종기 개발기술, 무인기 조종훈련 시뮬레이터 기술 등 (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) 10kg 이상의 물품의 비가시권 비행운송에 대한 드론 제조기술 등 (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) 엔진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기술 등
	우주	(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) 위성본체 개발용 전력시스템, 자세제어용 센서 및 시스템 등 (위성 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) 인공위성 탑재용 광학 탑재체, 영상레이더 탑재체 등 (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) 우주발사체 개발용 액체엔진, 대형구조물, 관성항법 유도시스템 등 (위성통신 송수신 안테나 개발 기술) 인공위성 추적기능 위성통신 안테나 제작 기술 등
방위 산업	방산 장비	(추진체계 기술) 유무인 항공기, 기동장비, 유도무기 등 (군사위성체계 기술) 군사용 위성체계 중 감시정찰 및 통신위성의 위성체계, 구성품 등
	전투 지원	(유무인복합체계 기술) 유무인복합체계에 필요한 환경인식기술, 위치추정기술 등
에너지 환경	원자력	(원자로 냉각재 펌프)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, 원형제작, 성능시험기술 등 (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) 내열 내식성 소재, 원자로 내부구조물 개발 기술 등 (방사선 이용 대형공정 시스템 검사기술) 철강 배관 손상진단 등 자동검사시스템 기술 등 (신형원전 표준설계 기술)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, 핵증기공급계통 설계기술 등 (가압경수형원전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) 고유 노심설계코드 개발기술 등 (친환경 저탄소 후행 핵주기 기술) 해체 엔지니어링, 해체 원전 계통 기기등 제염기술 등 (가동원전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) 단일고장에 의한 발전소 정지유발 요소제거 등 (SMR 설계 및 검증 기술) SMR 노심 설계 및 해석기술, 계통 핵심기기 설계기술 등 (SMR 제조 기술) 탄력운전 대응 열적성능강화 핵연료집합체 개발, 제조기술 등 (대형 원자력발전소 제조기술) 대형원자력발전소를 구성하는 원자로, 내부구조물 제조기술 등 (혁신 제조공법 원전 분야 적용 기술) 분말-열간등방압성형 기술, 전자빔 용접기술 등

주: 1) 현행 법령상 명칭은 ‘항공·우주’임

- 또한, 방위산업 등 기술에 대한 기업규모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 등의 현황, 공제규모 등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과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국세청에 따르면 R&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까지는 구분이 가능하나, 기술 분야별 공제실적은 구분되지 않음
 - 참고로, 2023년 법인세 신고기준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: 2023년 법인세 신고기준
(단위: 억원)

구분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
R&D 세액공제	23,760	9,492	11,968
통합투자세액공제	10,332	38	7,432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